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67
----------	--------

제출년월일 : 2020.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용어 일부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위원회의 구성 정비(안 제5조제4항제1호~4호)

다. 용어 정비 및 미비점 보완 등 명확성 제고(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5조제2항)

라. 상위규범 준용에 따른 조례 내용 삭제(제11조 및 제15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10. 8. ~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제2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1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이하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1년 2월 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4명**”을 “**4명 이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명**”을 “**3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명**”을 “**3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명**”을 “**6명 이내**”로 한다.

제11조,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u>마포자원회수시설</u>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 용산구·서울특별시 종로구·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납부하는 금액</p> <p>2. (생략)</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2월 1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p>	<p>제2조(기금의 조성) ----- ----- ----- -----.</p> <p>1. <u>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마포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u> ----- -----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5년 12월 31일</u>----- -----.</p> <p>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위원으</u></p>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본청의 국장 4명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명

3. 주민대표 3명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6명

⑤ ~ ⑧ (생략)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로 성별을 고려하여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명 이내

2. -----
----- 3명 이내

3. ---- 3명 이내

4. -----
--- 6명 이내

⑤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과의 일치를 통해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박준영 (☎ 9233)